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2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
박기재, 이광호, 이영실,
이정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중요성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, 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'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'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또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확대하여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.
- 그 밖에 일부 조문을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정비하고, 조례의 체계에 맞춰 조항의 위치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조의2 ~ 제21조의9 신설).

나.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 21조의10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고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시장이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(2차 피해 포함)
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3.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
4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
제21조의3(고충심의위원회 구성) ①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

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이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, 행정국장, 감사위원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⑤ 고충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여성권익담당관이 된다.

제21조의4(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1조의5(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2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
3. 제21조의8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
4.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5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6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7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1조의6(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의7(고충심의위원회 회의)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의8(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(친족이었던 자 포함)관계에 있는 경우
2.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

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 본인도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21조의9(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)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시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2조의2) 제4항 중 “조사과정”을 “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”으로, “처리”를 “처리, 심의”로, “조사 과정”을 “조사나 심의 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조사”를 “조사와 심의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자에게는”을 “사람에게는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제2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충심의위원회 존속기한) 고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1조의2(성희롱·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</u> <u>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고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시장이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(2차 피해 포함)</u> <u>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</u> <u>3.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</u> <u>4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</u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1조의3(고충심의위원회 구성)</u></p> <p><u>①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
<신 설>

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이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, 행정국장, 감사위원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⑤ 고충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여성권익담당관이 된다.

제21조의4(고충심의위원회 위원
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21조의5(고충심의위원회 위원
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
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
경우
2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
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
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3. 제21조의8제1항에도 불구하
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
경우
4.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
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
비밀을 누설한 경우
5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간의 심
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
기 어려운 경우
6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
석하지 아니한 경우
7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
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
정되는 경우

<신 설>

제21조의6(고충심의위원회 위원

<신 설>

<신 설>

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의7(고충심의위원회 회의)

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의8(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(친족이었던 자 포함)관계에

있는 경우

2.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

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 본인도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21조의9(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)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시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2조의2(피해자등 보호 및 2차

제21조의10(피해자등 보호 및 2차

피해 방지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(생략)

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여야 한다.

제33조(시민참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피해 방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조사나
제21조의2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-----
--- 처리, 심의--- 조사나 심의
과정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조사와 심의-----
-----.

제33조(시민참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사람에게는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기금의 관리」 운용) ① ·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2. (생략)

3.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~ ⑧ (생략)

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

· ② (생략)

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·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(생략)

제41조(기금의 관리」 운용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사람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사람

④ (현행과 같음)